

수출신고서 FTA C/O 발급여부 신고시스템 개선 일자 알림

RCEP 발효('22. 2. 1.)로 하나의 수출 상대국에서 적용 가능한 FTA 협정이 2개 이상인 국가(1국가 多협정국)의 FTA 활용 현황 파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수출신고서상 'FTA C/O 발급여부' 신고시스템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적용시점

○ 적용시점 : 2023년 5월 4일 20시경부터 (전산 반영 시점)

* 대한상공회의소 FTA C/O 신청 시스템도 동일한 시점부터 적용

II. 변경내용

1. 'FTA C/O 발급여부'가 'Y'로 신고된 수출신고건에 대해서만 FTA C/O 발급신청 가능
2. 'FTA C/O 발급여부'가 'N'인 수출신고건은 'Y'로 정정 후 FTA C/O 발급을 신청해야 하며, 이 경우 정정신청 자동승인 및 정정 불이익 면제
 - 적용대상 항목 : 수출신고서의 'FTA C/O 발급여부' 또는 '발급협정명'
 - 적용요건 : 정정사유코드를 '31. FTA C/O 발급여부 정정'으로 입력
 - 적용절차 : 수출신고 정정신청 자동 승인, 오류점수 면제 및 법규준수도 평가점수 미부과

III. 참고사항

1. 'FTA C/O 발급여부' 또는 '발급협정명' 이외의 항목을 포함하는 수출신고 정정 신청은 자동승인 및 정정 불이익 면제가 적용되지 않음
2. 'FTA C/O 발급여부'는 비특혜 원산지증명서에는 적용되지 않음

| Contact



이선아 본부장

T 02-6011-3040
E salee@esein.co.kr



장수한 관세사

T 02-6011-3091
E shjang1@esein.co.kr

SEIN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3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